

회사윤리규정

(주)비에스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, 고객·주주·협력업체 등과 함께 성장 발전하며, 신뢰 받는 초일류기업이 되기 위하여 임직원들의 사고와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윤리규정을 제정·실천하여 고객의 가치 창조 및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.

제 1 장 고객에 대한 책무

제1조 (고객우선주의)

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,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을 두지 않으며, 고객의 입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앞서 고객의 가치를 창조해 나아간다.

제2조 (고객의 권익보호)

- ①고객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은 고객의 알권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한다.
- ②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지득한 경우,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그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.
- ③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.
- ④제품에 대한 충실하고 적절한 표시를 하며 허위·과장 광고를 하지 않는다.

제 2 장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

제3조 (평등한 기회)

- ①회사는 자격을 구비한 모든 업체에게 거래선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.
- ②거래선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시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.

제4조 (공정한 거래절차)

- ①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,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
- ②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.
- ③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, 거래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상호 보완한다.
- ④임직원은 협력업체에 대해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비용전가 등 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
제 3 장 주주 이익 보호

제5조 (주주이익보호)

- 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보호와 투자가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.
- ② 모든 주주를 평등하게 대우하며, 주주권을 보호하고, 주주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③ 회사에 대한 주주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회사의 정보를 충실하게 공시한다.

제 4 장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의무

제6조 (임직원의 존중)

- ①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대하며, 각자의 기본권을 존중한다.
- ② 회사는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근무·교육체제를 확립한다.

제7조 (공정한 대우)

- ①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며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.
- ② 회사는 고용, 업무, 승진 등에 있어서 성별·종교·연령·신체조건·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.

제8조 (인재의 육성과 창의성 촉진)

- ① 회사는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을 장려하며, 그 능력 개발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교육기회를 제공하며,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.
- ② 회사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·건의하고,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.

제9조 (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)

- ① 회사는 신고자 자신의 귀책사유 행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.
- ② 회사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.
- ③ 회사는 신고자 자신과 친족 또는 신고와 관련없는 제3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.

제 5 장 임직원의 회사에 대한 의무

제10조 (기본윤리)

- ① 임직원은 “(주)비에스이인”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,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한다.
- ②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.

제11조 (사명의 완수)

- ① 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방침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.
- ②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한다.

- ③회사의 재산을 유지관리하고, 업무상 지득한 회사의 비밀을 보호한다.
- ④동료 및 관계 부서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.

제12조 (자기계발)

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,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.

제13조 (공정한 직무수행)

- ①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,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.
- ②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는다.
- ③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,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제14조 (직장내 성희롱 방지)

- ①임직원은 성희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의 분위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, 노동의욕 상실·업무생산성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고, 회사의 성희롱방지규정을 준수하며, 이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.
- ②음담패설을 금하고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 등을 강요하지 아니한다.
- ③회사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아니한다.
- ④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
제15조 (회사와의 이해상충 회피)

- ①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도 회피한다.
- ②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산을 무단사용해서는 안된다.

제 6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무

제16조 (건전한 기업 활동)

- ①회사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.
- ②회사는 사무소가 위치한 국내외 주재국 또는 지역사회에의 가치관을 존중하고, 각종 규범·통제기준을 준수하며, 건전한 기업문화 창달에 노력한다.

제17조 (사회발전에 기여)

- ①회사는 고용창출과 납세 기타 각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한다.
- ②회사는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.
- ③교육·문화·복지 사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.

제18조 (정치관여 금지)

- ①회사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. 다만,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.

- ②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을 존중한다. 임직원은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자격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으나, 개인 신분임을 분명히 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
제19조 (환경보호)

- ①회사는 환경친화적 기업을 지향하며, 환경 관련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며, 환경보호운동에 적극 참여한다.
- ②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과 자원의 보존에 앞장선다.